

의안번호	2114962
의 퇴 인	조명희 의원
회 답 일	2022.4.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조정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금융투자소득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5천만원을 기본공제하되 3억원 이하에서는 100분의 20,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부과(안 제64조의3제2항, 제84조제3호)
 - 현행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할 예정
 - 개정안은 기본공제금액을 5천만원으로 인상하고, 3억원 이하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3억원 초과금액은 100분의 25의 세율을 부과

[표 1] 가상자산 과세체계

	현행	개정안
과세시점	2023년 1월 1일	좌동
과세방법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좌동
이월공제	-	결손금 이월공제 5년 허용
기본공제	250만원	5천만원
세율	20%	가상자산소득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시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25%)
납부	차년도 5월 신고·납부	좌동

II. 미첨부 근거규정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Ⅲ. 미첨부 사유

- 개정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인한 소득에 대해 5천만원까지 기본공제하며, 3억원 이하 소득에서는 20%, 3억원 초과금액은 25%의 세율을 부과함에 따라 소득세수의 변화 예상
 - 현행법은 과세기간(1년) 내 발생한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인한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
- 개정안에 따른 소득세 변화액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개인별 가상자산 소득 금액에 대한 정보가 필요함
 - 소득세수 증감액 = 개정안에 따른 소득세수(A) - 현행법에 따른 소득세수(B)
 - $$A = \sum_{t=2023}^T \sum_{i=1}^N [(가상자산소득과세표준^* \text{ 3억원 이하 금액}_{it} \times 20\%) + (가상자산소득과세표준 \text{ 3억원 초과액}_{it} \times 25\%)]$$
 - $$B = \sum_{t=2023}^T \sum_{i=1}^N 가상자산소득과세표준_{it} \times 20\%$$
 - * 가상자산소득과세표준 = 가상자산소득금액** - 기본공제***
 - ** 가상자산소득금액 =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로 인한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취득가액+부대비용)
 - *** 현행법에 의한 기본공제는 250만원, 개정안은 5천만원
- 그러나 2023년부터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현시점에는 과세 사례가 없어 관련 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추계가 불가능함
 - 국세청은 가상자산 거래 및 신고사항을 수집·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 (2021.12)하고 2023년부터 운영 예정
 - 2021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¹⁾²⁾에 따르면 2021년 12월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55.2조원, 2021년 하반기(6개월간) 총 거래금액은 2,073조원이며, 24개 사업자에 계정이 개설된 등록 이용자수는 총 1,525만명으로 조사되었으나 동 자료만으로는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정 곤란

1) 금융위원회, 「21년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2022.2.

2) 2021년 12월 말 기준 29개 가상자산사업자가 제출한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집계한 자료

[표 2] 국내 가상자산 시장 현황

(단위: 개, 조원, 만명)

거래소	가상자산수	시가총액	등록이용자수	실제이용자수
원화마켓	622	53.3	1,339.5	552.9
코인마켓	635	1.9	185.9	5.5
합계	1,257	55.2	1,525.4	558.5

자료: 금융위원회, 「'21년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2022.2.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소득세수의 변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1과
과장	박연서
추계세제분석관	박지원
연락처	02-6788-4662
	jwpark1209@nabo.go.kr
